

일본의 도로법제 및 운영 - 도로법을 중심으로 -

정보신청기관 :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

I. 서론

일본의 도로의 법제를 살펴봄에 있어서 도로의 종류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그 관리자는 누구인지, 또한 도로의 신설, 개축, 유지를 위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도로 통행료의 수입은 누가 취하는지 등에 관하여, 특히 도로법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하고자 한다.

II. 도로의 종류¹⁾

1. 고속자동차국도

고속자동차국도에 관하여는 도로법상의 규정 외에 고속자동차국도법에 규정하고 있다. 고속자동차국도란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제공되는 도로로서 전국적인 자동차교통망의 주요부분을 구성하고 있으며, 정치·경제·문화상 특히 중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것으로 그밖에 국가의 이

해에 특히 중대한 관계가 있는 국도를 말한다(고속자동차국도법 제4조).

2. 일반국도

일반국도는 고속자동차국도와 함께 전국적인 간선도로망을 구성하고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정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도로법 제5조).

- 1) 국도를 중단, 횡단 또는 순환하고 토도부현청 소재지(북해도의 지청소재지를 포함), 그밖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으로 특히 중요한 도시(이하 '중요도시'라 함)을 연결하는 도로
- 2) 중요도시 또는 인구 10만 이상의 시와 고속자동차국도 또는 전호에 규정하는 국도를 연결하는 도로
- 3) 2 이상의 시를 연결하는 고속자동차국도 또는 제1호에 규정하는 국도에 도달하는 도로
- 4) 항만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정중요



1) 도로법 제3조.

항만 또는 동법 부칙 제5항에 규정하는 항만, 중요한 비행장 또는 국제관광상 중요한 곳과 고속자동차국도 또는 제1호에 규정하는 국도를 연결하는 도로

- 5) 국토의 종합적인 개발 또는 이용상 특별한 건설 또는 정비를 필요로 하는 도시와 고속자동차국도 또는 제1호에 규정하는 국도를 연결하는 도로

3. 토도부현도

토도부현도란 지방적 간선도로망을 구성하며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토도부현 지사가 당해 토도부현의 구역 내에 있는 부분으로 인정한 것을 말한다(도로법 제7조).

- 1) 시 또는 인구 5천 이상의 정(이하 '주요지'라 일컬음), 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요지, 항만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주요항만 또는 지방항만, 어항어장정비법 제5조에 규정하는 제2종 어항 또는 제3종 어항 또는 비행장(이하 '주요항'이라 일컬음), 철도 또는 궤도의 주요한 정차장 또는 정류장(이하 '주요정차장'이라 일컬음) 또는 주요한 관광지를 연결하는 도로
- 2) 주요항 및 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요한 관광지를 연결하는 도로
- 3) 주요정차장 및 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요한 관광지와 연결하는 도로



2) 도로법 제3장 제1절.

- 4) 2 이상의 시, 정, 촌을 경유하는 간선으로, 시, 정, 촌의 연선지방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요지, 주요항 또는 주요정차장을 연결하는 도로

- 5) 주요지, 주요항, 주요정차장 또는 주요한 관광지 및 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고속자동차국도, 국도 또는 전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토도부현도를 연결하는 도로

- 6) 전 각호에 열거한 것 외에 지방개발을 위해 특히 필요한 도로

토도부현의 도지사는 노선을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우선 토도부현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

4. 시정촌도

시정촌의 구역 내에 있는 도로로서 시정촌장이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도로법 제8조). 시정촌장이 노선을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우선 당해 시정촌의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Ⅲ. 도로의 관리자²⁾

1.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국도의 신설 또는 개축은 국토교통성장관이 행한다. 다만, 공사의 규모가 작거나 그밖에 정

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에 의해 토도부현이 그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관해서는 그 공사에 관한 노선의 부분이 있는 토도부현이 행한다(도로법 제12조).

2. 국도의 유지, 수선 그밖의 관리³⁾

국도의 유지, 수선, 공공토목시설재해복구사업비국고부담법의 적용을 받는 재해복구사업, 그 밖의 관리는 정령으로 지정하는 구간 내에서는 국토교통성장관이 행하고, 그 밖의 부분에 관해서는 토도부현이 그 노선의 당해 토도부현의 구역내에 있는 부분에 관해서 행한다.

국토교통성장관은 정령으로 정하는 곳에 의해 지정구간 내의 국도의 유지·수선 및 재해복구 이외의 관리를 당해 부분의 존재하는 토도부현 또는 지정시가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국토교통성장관은 공사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경우, 고도의 기계력을 사용하여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토도부현의 구역의 경계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토도부현을 대신하여 스스로 지정구간 외의 국도의 재해복구에 관한 공사를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국토교통성장관은 우선 그 취지를 당해 토도부현에 통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토도부현이 유지·수선·재해복구, 그 밖의 관리를 행하는 경우에 해당 국도의 수선 또는 재해복구에 관한 공사가 토도부현의 구역의 경계에 관계되는 때에는 관계 토도부현은 미리 수선 또는 재해복구에 관한 공사설계 및 실시계획에 관해서 협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3. 토도부현도의 관리

토도부현도의 관리는 그 노선이 있는 토도부현이 행한다(도로법 제15조).

4. 시정촌도의 관리⁴⁾

시정촌도의 관리는 그 노선이 있는 시정촌이 행한다.

시정촌장이 당해 시정촌의 구역을 넘어 지정촌도의 노선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 도로의 관리는 당해노선을 인정한 시정촌장이 통할하는 시정촌이 행한다. 다만, 당해 노선이 다른 시정촌도의 노선과 중복하는 경우에는 그 중복하는 부분의 도로의 관리방법에 관하여는 관계 시정촌장이 각각 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하여야만 한다.

관계 시정촌장의 협이가 성립한 경우에 있어서는 관계 시정촌장은 성립한 협의의 내용을 공



3) 도로법 제13조.

4) 도로법 제16조.

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5. 관리의 특례⁵⁾

지정시의 구역 내에 존재하는 국도의 관리로서 공사의 규모가 작거나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에 의해 토도부현이 그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관해서는 그 공사에 관한 노선의 부분이 있는 토도부현이 행하는 것과 지정시의 구역 내에 있는 토도부현도의 관리는 당해 토도부현이 행한다.

지정시 외의 시는 토도부현과 협의하고, 그 동의를 얻어 당해 시의 구역 내에 존재하는 국도의 관리로서 토도부현이 행하는 것과 동시에 당해 시의 구역 내에 존재하는 토도부현도의 관리를 행할 수 있다.

지정시 외의 시정촌은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의 안전성 또는 편리성의 향상 또는 쾌적한 생활환경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당해 시정촌의 구역 내에 있는 국도 또는 토도부현도의 신설, 개축, 유지, 수선, 국도 또는 토도부현도에 부속하는 도로의 부속물의 신설, 개축 중 보도의 신설, 개축, 유지, 수선, 그 밖의 정령에 정하여 토도부현이 행하는 것으로 하는 것을 토도부현을 대신하여 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도부현과 협의하고 그 동의를 얻어 그것을

행할 수 있다.

지정시 외의 시정촌은 국도 또는 토도부현의 신설, 개축, 유지, 수선을 행하려고 하는 때, 당해 국도 또는 토도부현의 신설, 개축, 유지 또는 수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여 그 취지를 공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6. 도로의 구역의 결정 및 공용의 개시⁶⁾

도로를 관리하는 자는 노선이 지정되거나 노선의 인정, 변경이 공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로의 구역을 결정하고,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여 이를 공시하며, 이를 표시한 도면을 관계 지방정비국 또는 북해도개발국, 관계 토도부현, 시정촌의 사무소(이하 '도로관리자의 사무소'라 일컬음)에 있어서 일반의 공람에 제공하지 않으면 안된다. 도로의 구역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도로관리자는 도로의 공용을 개시,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여 그 취지를 공시하고, 그것을 표시한 도면을 도로관리자의 사무소에 있어서 일반의 공람에 제공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만, 기존의 도로에 관해서 노선과 중복되어 지정, 인정, 변경된 경우에는 그 중복하는 도로의 부분에 관해서는 이미 공용의 개



5) 도로법 제17조.

6) 도로법 제18조.

시가 있다고 간주되며, 공용개시의 공시를 요하지 않는다.

7. 경계지의 도로의 관리⁷⁾

지방공공단체의 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에 관해서는 관계 도로관리자는 협의하여 별도로 그 관리의 방법을 정할 수 있다.

협의를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 도로관리자는 당해 도로가 토도부현의 구역의 경계에 있을 때 또는 관계 도로관리자가 토도부현인 때에는 국토교통성장관에게, 그 밖의 경우에는 토도부현지사에게 재정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성장관 또는 토도부현지사가 재정한 경우에는 관계 도로관리자의 협의를 성립한 것으로 간주한다.

협의를 성립된 경우에는 관계 도로관리자는 성립한 협의의 내용을 공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8. 공용관리시설의 관리⁸⁾

도로교통소음에 의해 발생하는 장애의 방지, 경감, 도로의 배수, 그 밖의 도로의 관리를 위한 시설, 공작물로서 당해 도로와 인접하는 다른 도로로부터 발생하는 도로교통소음에 의해 발생

하는 장애의 방지, 경감, 당해 다른 도로의 배수, 그 밖의 다른 도로의 관리에 이바지하는 것(이하 '공용관리시설관계도로관리자'로 일컬음)의 관리에 관하여는 당해 도로의 도로관리자는 협의하여 별도로 그 관리의 방법을 정할 수 있다.

협의를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용관리시설관계도로관리자는 국토교통성장관을 제외하고 공용관리시설관계도로관리자 중 토도부현인 때에는 국토교통성장관에게, 그 밖의 경우에는 토도부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성장관 또는 토도부현지사가 재정한 경우에는 공용관리시설관계도로관리자의 협의를 성립한 것으로 간주한다.

협의를 된 경우에는 공용관리시설관계도로관리자는 성립한 협의내용을 공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9. 겸용공작물의 관리⁹⁾

도로, 제방, 호안, 댐, 철도, 궤도용 다리, 건널목, 역전광장, 그 밖의 공용에 제공하는 공작물, 시설이 상호간 효용을 겸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의 도로관리자 및 타 공작물의 관리자는 당해 도로 및 타 공작물의 관리에 관해서는 협의하여 별도로 그 관리의 방법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타



7) 도로법 제19조.
8) 도로법 제19조의 2.
9) 도로법 제20조.

공작물의 관리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도로에 관해서는 도로에 관한 공사 및 유지 이외의 관리를 행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

협의를 경우에는 국토교통성장관은 도로관리자 및 타 공작물의 관리자와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공작물에 관한 주무장관과 다시 협의할 수 있다.

10. 타 공작물의 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¹⁰⁾

도로 및 타 공작물 또는 서로 효용을 겸하는 경우에는 타 공작물관리자에게 당해 도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게 하거나 유지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자는 타 공작물관리자에게 당해 도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게 하거나 유지하게 할 수 있다.

11.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¹¹⁾

도로관리자는 도로에 관한 공사 이외의 공사(이하 '타 공사'라 함)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관한 공사 또는 도로를 손괴하거나 오손시킨 행위, 도로의 보강, 광폭, 그 밖의 도로의 구

조의 현상을 변경할 필요를 발생시킨 행위(이하 '타 행위'라 일컬음)에 의한 도로의 공사 또는 유지를 당해 공사의 집행자 또는 행위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타 공사가 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하천의 하천공사인 때에는 당해 도로에 관한 공사에 관해서는 경계지에 관한 도로법 제19조는 적용하지 않는다.

12. 부대공사의 시행¹²⁾

도로관리자는 도로에 관한 공사로 인하여 필요를 발생시킨 타 공사 또는 도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타 공사를 도로에 관한 공사와 더불어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타 공사는 하천공사, 사방공사인 때에는 당해 타 공사의 시행에 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3. 도로관리자 이외의 자가 행하는 공사¹³⁾

도로관리자 이외의 자는 도로에 관한 공사의 설계 및 실시계획에 관해서 도로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도로에 관한 공사 또는 도로의 유지를



10) 도로법 제21조.

11) 도로법 제22조.

12) 도로법 제23조.

13) 도로법 제24조.

행할 수 있다. 다만, 도로의 유지에 정령으로 정한 극히 경미한 경우는 도로관리자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14. 유료의 교량, 도선시설¹⁴⁾

토도부현, 시정촌인 도로관리자는 토도부현 또는 시정촌도에 관하여 국토교통성장관의 허가를 얻어 교량, 도선시설의 신설, 개축에 필요로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기 위해 일정기간에 한해 당해 교량 통행자 또는 당해 도선시설의 이용자로부터 통행자 또는 이용자가 얻은 이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교량, 도선시설은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안된다.

- 1) 통행, 이용의 범위가 지역적으로 한정될 것
- 2) 통행자, 이용자가 통행, 이용에 현저히 이익을 얻을 것
- 3) 신설, 개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액을 지방채 이외의 재원을 가지고 지불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것

15. 허가를 얻은 도로관리자의 의무¹⁵⁾

유료의 교량, 도선시설에 관하여 국토교통성

장관의 허가를 얻은 도로관리자는 공사의 도중에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여 토도부현인 도로관리자는 국토교통성장관의, 시정촌인 도로관리자는 토도부현지사의 검사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도 같다.

국토교통성장관, 토도부현지사는 검사 결과 당해 교량, 도선시설의 구조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도로관리자에 대하여 공사방법의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도로관리자는 국토교통성장관으로부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공사방법의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토도부현지사는 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한 때에는 그 내용 및 도로관리자가 행한 조치를 국토교통성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허가를 받은 도로관리자는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당해 교량, 도선시설의 공용을 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16. 도로관리자의 권한의 대행¹⁶⁾

국토교통성장관은 지정구간 외의 국도의 신설, 개축을 행하는 경우 또는 지정구간 외의 국도의 재해복구에 관한 공사를 행하는 경우에는



14) 도로법 제25조.
15) 도로법 제26조.
16) 도로법 제27조.

정령으로 정하여 당해 지정구간 외의 국도의 도로관리자를 대신하여 권한을 행사한다.

지정시 외의 시정촌은 보도의 신설 등을 행하는 경우에는 정령으로 정하여 당해 도로의 관리자를 대신하여 그 권한을 행사한다.

17. 도로대장¹⁷⁾

도로관리자는 그 관리하는 도로의 대장을 만들어 보관하지 않으면 안된다. 도로대장의 기재사항, 그 밖의 조제 및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한다. 도로관리자는 도로대장의 열람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IV. 도로에 관한 비용, 수입 및 공용부담¹⁸⁾

1. 도로의 관리에 관한 비용부담의 원칙¹⁹⁾

도로의 관리에 관한 비용은 법률, 공공토목시설재해복구사업비국고부담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도로의 도로관리자가 부담한다.

2. 국도의 관리에 관한 비용부담의 특례 등²⁰⁾

국도의 신설, 개축에 요하는 비용은 국토교통성장관이 당해 신설 또는 개축을 행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2/3를, 토도부현이 1/3을 부담하며, 토도부현이 당해 신설, 개축을 행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당해 토도부현이 각각 1/2씩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국도의 신설, 개축에 의해 다른 토도부현도 현저히 이익을 얻은 때에는 국토교통성장관은 정령으로 정한 기준에 의해 그 이익을 얻은 한도에서 당해 국도가 소재하는 토도부현이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의 일부를 현저히 이익을 얻은 다른 토도부현에게 분담시킬 수 있다.

지정구간 내의 국도의 재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55/100를, 토도부현이 45/100를 부담한다.

국토교통성장관이 정령으로 지정구간 내의 국도의 유지, 수선 및 재해복구 이외의 관리를 당해 부분이 있는 토도부현, 지정시가 행하도록 한 경우에는 당해 토도부현 또는 지정시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에 국토교통성장관은 현저히 이익을 얻은 다른 토도부현에 국도가 존재하는



17) 도로법 제28조.

18) 도로법 제4장.

19) 도로법 제49조.

20) 도로법 제50조.

토도부현이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의 일부를 분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성장관은 관계 토도부현의 의견을 들어야만 한다.

3. 시정촌의 부담금²¹⁾

토도부현이 부담하는 비용 중 공사, 유지로 당해 토도부현의 구역 내의 시정촌을 이롭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 또는 유지에 의해 이익의 한도 내에서 당해 시정촌에 대하여 그 공사,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시정촌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당해 시정촌의 의견을 들은 후 당해 토도부현의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

4. 부담금의 납부 및 지출²²⁾

국토교통성장관은 국도의 신설, 개축을 행하는 경우에는 지정구간 내의 국도의 재해복구를 행하는 경우에는 우선 전액 국비로 행한 후 토도부현은 정령으로 규정된 바에 의하여 부담금을 국고에 납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토도부현이 국도의 신설, 개축을 행하는 경우

에는 국가는 도로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다른 토도부현은 제50조 제4항에 의한 부담금을, 정령에 규정된 것에 의해 당해 토도부현에 대하여 지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시정촌의 부담금은 정령으로 규정한 것에 의해 토도부현에 납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5. 경계지의 도로의 관리에 관한 비용²³⁾

지방공공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도로의 관리에 관한 비용으로 지방공공단체의 구역의 경계에 관한 도로에 관하여는 관계도로관리자는 협의하여 그 부담해야 하는 금액과 부담방법을 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성장관은 토도부현지사가 재정한 경우에는 관계도로관리자의 협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한다.

6. 공용관리시설의 관리에 관한 비용²⁴⁾

도로법 제49조,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국가는 지방공공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도로의 관리에 관한 비용으로 공용관리시설에 관한 것에 관하여는 공용관리시설관계도로관리자는 협의하여



21) 도로법 제52조.

22) 도로법 제53조.

23) 도로법 제54조.

24) 도로법 제54조의 2.

그 분담해야 하는 금액 및 그 분담방법을 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성장관은 토도부현지사가 재정을 한 경우에는 공용관리시설관계도로관리자의 협의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한다.

7. 겸용공작물의 비용²⁵⁾

도로법 제49조,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국가는 지방공공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도로의 관리에 관한 비용으로 당해 도로가 다른 공작물과 효용을 겸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성장관 또는 당해 도로관리자는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그 분담해야 하는 금액, 분담방법을 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성장관 및 당해 다른 공작물에 관한 주무장관 또는 토도부현지사가 재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성장관 또는 당해 도로의 도로관리자와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의 협의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한다.

8. 도로에 관한 비용의 보조²⁶⁾

국가는 국토교통성장관이 지정하는 주요 토도부현 또는 시도를 정비하기 위해 필요가 있는 경우, 도로에 관한 조사를 행할 필요가 있는 경

우, 자원의 개발, 산업의 진흥, 관광, 그 밖의 국가의 정책상 특별히 도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규정하여 당해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요하는 비용에 관하여는 1/2 이내를, 도로에 관한 조사에 요하는 비용에 관하여는 1/3 이내를, 지정구간 외의 국도의 수선에 요하는 비용에 관하여는 1/2 이내를 도로관리자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다.

9. 도로관리자 이외의 자가 행하는 공사 등에 관한 비용²⁷⁾

도로관리자 이외의 자가 행하는 도로에 관하여, 또는 도로의 유지에 요하는 비용은 도로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도로의 유지를 행하는 자가 부담하지 않으면 안된다.

10. 원인자 부담금²⁸⁾

도로관리자는 타 공사 또는 타 행위에 의해 필요성이 생긴 도로에 관한 공사, 도로의 유지비용에 관하여는 그 필요를 발생시킨 한도 내에서 타



25) 도로법 제55조.

26) 도로법 제56조.

27) 도로법 제57조.

28) 도로법 제58조.

공사 또는 타 행위에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도록 한다. 이 경우에는 타 공사가 하천공사인 때에는 도로에 관한 공사의 비용에 관해서는 하천법 제68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11. 부대공사에 관한 비용²⁹⁾

도로에 관한 공사에 필요를 발생시킨 타 공사 또는 도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를 발생시킨 타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허가에 부수한 조건에 특별히 정함에 있는 경우 및 협의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필요를 발생시킨 한도에 있어서 그 법률의 규정에 근거한 도로에 관한 공사에 관해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경우에는 타 공사가 하천공사인 때에는 타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도로관리자는 도로에 관한 공사가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타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필요를 발생시킨 한도 내에서 그 원인이 된 공사 또는 행위에 함께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2. 타 공작물관리자가 행하는 도로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³⁰⁾

도로관리자가 타 공작물관리자에게 시행케 한 도로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당해 도로에 관한 공사에 관해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자가 부담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만, 당해 타 공작물의 관리자가 당해 도로에 관한 공사로 인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타 공작물관리자에 대하여 그 얻은 이익 한도 내에서 당해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3. 수익자부담금³¹⁾

도로관리자는 도로에 관한 공사로 현저히 이익을 얻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얻은 한도 내에서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부담금의 부담해야 하는 자의 범위 및 징수방법에 관하여는 도로관리자인 지방공공단체의 조례(지정구간내의 국도에 있어서는 정령)로 정한다.



29) 도로법 제59조.

30) 도로법 제60조.

31) 도로법 제61조.

14. 도로의 점용에 관한 공사의 비용³²⁾

도로의 점용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로의 점용과 함께 도로관리자의 허가를 얻은 자가 부담하지 않으면 안된다. 도로관리자가 도로의 점용에 관한 공사를 행하는 경우도 같다.

15. 부담금의 통지 및 납입수속³³⁾

부담금액의 통지 및 납입수속, 그 밖의 부담금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16. 수입의 귀속³⁴⁾

주차요금 및 할증금, 연결료는 도로관리자의 수입으로 하며, 도로법 제39조에 따른 점용료는 정령으로 규정하여 구분함에 따라 도로관리자 또는 지정구간 내에 국도의 유지, 수선, 재해복구 이외의 관리를 행하는 토도부현 또는 지정시의 수입으로 한다.

17. 의무이행에 소요되는 비용³⁵⁾

도로법, 도로법에 기초한 명령, 조례, 이것에 의해 행하는 처분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의무자가 부담하지 않으면 안된다.

V. 결론

위에서 일본의 도로의 법제를 살펴보았다. 국도가 지방자치단체를 지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관리방법, 경계지의 도로의 관리, 도로의 개축·유지·보수에 있어서의 비용의 부담, 수익자 또는 원인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법 등은 우리나라에서의 도로의 관리 및 운용에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할 것이다.

임 동 번

(해외입법조사원, 변호사)



32) 도로법 제62조.

33) 도로법 제63조.

34) 도로법 제64조.

35) 도로법 제65조.